

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자치교육과

제정 2005· 9· 21 조례 제 585호
개정 2010· 8· 13 조례 제 846호
일부개정 2014· 12· 31 조례 제1102호
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15· 9· 25 조례 제1150호
일부개정 2021· 5· 1 조례 제169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의하여 이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· 8· 13, 2021· 5· 1>

제2조(보조 기준액의 제한)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개정 2010· 8· 13, 2021· 5· 1>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
- 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5.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 공간 설치 사업
6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신청 등)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·초·중학교의 장은 「이

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, 교육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·8·13, 2014·12·31>

제5조(심의위원회)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·5·1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이천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,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개정 2021·5·1>

1.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

2.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간부 공무원 2명

3.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·5·1>

제7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·5·1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1·5·1]

제9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·5·1>

1.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

2.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

- 가.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
- 나. 보조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
- 다.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

3. 전년도 보조금 결산심의 및 평가분석

4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〈신설 2021·5·1〉

- 1.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
- 2.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

제10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·5·1〉

- 1. 질병,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- 2.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
- 3.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때
- 4.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[본조신설 2015·9·25]

제10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② 위원회 심의·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·9·25]

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학교시설의 주민이용)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·5·1]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·12·31>

[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. 5. 1]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. 5. 1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·8·13 조례 제84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,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하고, 제12조 중 “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5·9·25 조례 제115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·5·1 조례 제16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